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552)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랑 제2선거구 출신 김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의 임기와 위촉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